KOSHA GUIDE H - 114 - 2019

>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

> > 2019. 10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김수근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보건부
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7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9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IARC(2012) Nickel and Nickel compounds. In: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 to humans. Arsenic, Metals, Fibres, and Dust. IARC monographs, Vol. 100C. Lyon, France: World Health Organization.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, 169–218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금속류-3 니켈과 그 화합물. 산업안전보건연구 원 2018-연구원-903
- KOSHA GUIDE W-1-2019,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H-82-2012,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(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작업환경측정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(작업 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, 동법 시행규칙 제98조(정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9년 10월 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H - 114 - 2019

#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(보건조치),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한다)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 의하여 니켈 또는 그 화합물(이하 "니켈"이라 한다)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 예방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니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발암물질"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, 발암성 1(A,B)인 성분의 함량을 0.1% 이상 또는 발암성 2인 성분의 함 량을 1.0% 이상 함유한 제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KOSHA GUIDE H - 114 - 2019

# 4. 니켈과 그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

니켈(nickel, Ni)은 원자번호 48인 단단한 은백색의 금속으로, 원소 주기율표 중 철 및 코발트에 이어 8족에 속하는 원소을 말한다. 니켈은 -1, 0, +2, +3, +4의 산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, 정상적인 자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화 상태는 +2이다.

니켈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<표 1>과 같다. 니켈(nickel, Ni)은 묽은 산에서는 철보다도 녹기 어렵다. 묽은 질산에는 쉽게 녹지만, 진한 질산에는 철과 같이 부동태를 만들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.

항목	내용
물질명	Nickel
원자량	158.69
CAS No.	7440-02-0
화학식	Ni
물리적 성상	은회색의 광택 있는 금속(수용성 니켈화합물 : 녹색의 냄새 없는 고체)
녹는점	1,555℃
꿇는점	2,837°C
비중	8.907 g/cm <sup>3</sup>
증기압	0 mmHg (1,810°C)

<표 1> 니켈의 물리화학적 특성

니켈 화합물은 불용성 니켈화합물로 탄산니켈, 산화니켈, 아황화니켈이 있고, 가용성 니켈화합물로 육수화질산니켈, 육수화황산화니켈, 염화니켈 등을 말한다. 니켈 화합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, 주요 화합물로는 <표 2>와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.

$\langle \overline{\Omega}$	2>	주 o	1.] 켄	화한물의	조루
\ TT	/./	T 10-	ロコ	와입크리	$\sim$ T

물질명	CAS 번호	화학식
아세트산니켈(nickel acetate)	373-02-4	Ni(CH <sub>3</sub> CO <sub>2</sub> ) <sub>2</sub>
니켈암모늄황산염(nickel ammonoium sulfate)	15699-18-0	$Ni(NH_4)_2(SO_4)_2$
탄산니켈(nickel carbonate)	3333-67-3	NiCO <sub>3</sub>
염화니켈(nickel chloride)	7718-54-9	NiCl <sub>2</sub>
시안화니켈(nickel cyanide)	557-19-7	Ni(CN) <sub>2</sub>
산화니켈(nickel oxide)	1313-99-1	NiO
질산니켈(nickel nitrate)	13138-45-9	$Ni(NO_3)_2$
아황화니켈(nickel subsulfide)	12035-72-2	Ni <sub>3</sub> S <sub>2</sub>
설파민산니켈(nickel sulfamate)	13770-89-3	Ni(NH <sub>2</sub> SO <sub>3</sub> ) <sub>2</sub>
황산니켈(nickel sulfate)	7786-81-4	NiSO <sub>4</sub>

# 5. 니켈 또는 그 화합물의 노출

- (1) 니켈은 건식 또는 습식으로 제련 및 정련 공정을 거쳐서 제조될 때 노출될 수 있다.
- (2) 니켈 정련작업이 밀폐된 전기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폐가스 및 분진을 동반하지 않으며, 니켈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다.
- (3) 페로니켈(합금용) 또는 니켈금속(입자상 또는 분말상)을 정련과정에서 아르곤 및 질소의 폭기시 포함되어 있던 탄소성분과 결합하여 니켈카르보닐이 발생할 수 있다.
- (4) 주조 작업을 할 때 니켈에 대한 노출은 용해작업(금속흄), 주탕작업(금속 흄), 사상 및 트리밍(금속분진), 절단공정(금속분진) 등의 발생에 의한다.
- (5) 작업환경 관리가 부적합할 경우 용해공정에서 발생한 니켈 금속흄이 작업장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.
- (6) 도금공정에서는 도금조에 황산니켈 및 니켈염화물을 첨가하는 작업과 도금 조에서 발생하는 미스트로 인해 니켈 또는 그 화합물에 대한 노출될 수 있 다.
- (7) 니켈의 분말에 의한 노출은 분말 야금 및 합금제조를 위한 배합 등에서 이루어진다.
- (8) 분말야금 방법 중 금속용사를 이용한 방법으로 고압의 가스와 고온 가열된 금속을 피가공물에 분사시킬 때에 금속 분말이 비산되어 노출되거나 금속 용사 과정처럼 피가공물에 부착되지 못하고 작업장으로 비산되는 분말에 의해 노출이 발생될 수 있다.
- (9) 합금제조에서는 금속분말의 배합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미세한 금속 분말이 비산되어 노출될 수 있다.

H - 114 - 2019

- (10) 니켈이 합금된 모재 금속을 용접하거나, 니켈이 함유된 도장 혹은 방청을 위한 피막처리가 되어 있거나 도금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용접할 때에 노출될 수 있다.
- (11) 스테인리스 및 니켈 합금 등의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에 들어 있는 니켈에 노출이 된다.
- (12) 도자기 및 유리의 채색에 사용되는 염료에 의한 노출이 될 수 있다.
- (13) 촉매용 니켈합금 및 화합물의 분말, 폐촉매 재생시에 노출된다.
- (14) 니켈-니켈, 니켈-수소 전지 등의 재생 시에 노출된다.

### 6. 니켈의 체내 동태

#### 6.1 흡수

- (1) 니켈은 호흡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고, 위장관을 통해서도 약간 흡수된다.
- (2) 가용성 니켈화합물과 니켈카르보닐은 폐 흡수율이 크지만, 물에 잘 녹지 않으면 폐에서 흡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.
- (3)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 니켈의 약 20~35%가 혈액으로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다.

# 6.2 대사 및 분포

- (1) 흡수된 니켈은 혈장에서 알루미늄과 니켈 단백질 분해효소(nikelplasmin)과 결합한다.
- (2) 니켈은 주로 신장에 분포한다.

### H - 114 - 2019

- (3) 니켈은 조직에 축적이 잘 안되며 약 1주일의 반감기를 가진다.
- (4) 불용성 니켈은 기관지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한다.
- (5) 태반을 빠르게 통과하여 태아의 조직에서 검출된다.

### 6.3 배설

- (1) 물에 잘 녹지 않으면 폐에서 흡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며, 일부는 재채기 또는 삼킴을 통해 점막과 함께 폐에서 제거된다.
- (2) 섭취된 니켈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다.
- (3) 모든 신체 분비물들(침, 땀, 눈물, 젖)에서도 니켈이 관찰된다.

# 7. 니켈에 의한 건강영향

### 7.1 발암성

- (1) 불용성 니켈 화합물은 사람의 비강, 부비동, 폐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- (2) 아황화니켈에 높은 농도(>10 mg Ni/m³)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험이 증가 한다.
- (3) 수용성 니켈은 그 자체로는 발암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
- (4) 국제암연구기구(IARC)에서는 다음 <표 3> 같이 구분하였다.

<표 3> 니켈 및 니켈 화합물의 IARC 발암 증거 구분

발암증거	Sufficient	Limited	Inadequate
돌림 <b>증</b> 기	(충분)	(제한적)	(불충분)
인체발암(Cancer in Human)			
황산니켈, 황화니켈+산화니켈	0		
(니켈 정련 산업)			
금속 니켈, 니켈 합금			0

# 7.2 주요증상 및 건강영향

- (1) 금속니켈 및 니켈화합물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.
- (2) 알레르기 천식, 만성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.
- (3) 니켈카르보닐 및 불용성화합물(아왕화니켈, 황화니켈)에 장기간 노출 되면 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킨다.
- (4) 니켈 및 니켈화합물 노출 근로자가 흡연을 할 경우 건강악화가 심해 질 수 있다.

# 8. 니켈에 의한 암 예방

### 8.1 작업관리

### 8.1.1 작업관리 방법

니켈과 그 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 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.

(1) 분말 상의 니켈과 그 화합물은 액체 또는 고체 매개물에 응집시켜 관리하며,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분말 대신 반죽형태(Paste), 또는 화합물 형태로 사용한다.

H - 114 - 2019

- (2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.
- (3) 사업주는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니켈과 그 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, 니켈과 그 화합물의 취급상 주의사항,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,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을 게시한다.
- (4) 니켈과 그 화합물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하여 보관한다.
- (5) 작업장에 퇴적 또는 누출된 니켈과 그 화합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의 진공청소기 등 흡입장치를 사용하거나 정전기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내도록 하고 흩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.
- (6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저장, 섭취, 흡연 등을 금지한다.
- (7)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,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(8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니켈과 그 화합물이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비 등도 설치 한다.

### 8.1.2 교육

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

- (1)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니켈과 그 화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(2) 당해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니켈과 그 화합물의 물리ㆍ화학적 특성

H - 114 - 2019

- (3) 니켈과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과 건강장해 예방대책
- (4)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재 조치 사항 및 유지, 관리 요령
- (5)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
- (6)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
- (7)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
- (8) 응급처치방법
- (9) 기타 안전 · 보건상의 조치 등

#### 8.1.3 취급일지 작성

사업주는 니켈과 그 화합물(불용성화합물)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 다.

"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(KOSH GUIDE H-147-2017)"에서 제시하고 있는 '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'양식을 참고한다.

#### 8.1.4 특별관리물질의 고지

사업주는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)에 따라 발 암성(1A) 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"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지침(KOSHA GUIDE H-147-2017)"에서 제시하고 있는 '특별관리물질 고지'양식을 참고한다.

#### 8.1.5 근로자의 준수사항

니켈과 그 화합물의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#### H - 114 - 2019

- (1) 니켈과 그 화합물의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.
- (2) 니켈과 그 화합물이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.
- (3) 니켈과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.
- (4)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.
- (5) 기타 니켈과 그 화합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.

#### 8.1.6 취급 및 보관 시 주의사항

- (1) 니켈을 사용, 취급, 저장하는 곳에는 담배와 불꽃같은 점화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.
- (2) 니켈은 강산(염산, 황산, 질산)과 산화제(과염소산염, 과산화물, 과망간산염, 염소산염, 질산염, 염소, 브롬, 불소) 그리고 금속 등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.
- (3) 햇빛과 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용기에 단단히 밀폐시켜 보관한다.

### 8.2 작업환경평가

### 8.2.1 작업환경측정 준비와 실시

- (1) 사업주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해야한다.
- (2)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### H - 114 - 2019

- (3)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.
- (4) 근로자는 그들에게 정하여진 니켈에 1일 8시간 시간가중노출을 반영하는 호흡위치에서의 시료채취에 응해야 한다.
- (5) 수 명의 근로자가 작업분류, 업무, 작업지역, 작업교대, 일하는 기간, 니켈에 노출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 대신에 이들 근로자를 대표하는 수만큼의 수로서 노출 농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 대표성을 갖는 시료에는 최고의 카드뮴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시료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(6)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27호)에 따른다.
- (7)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평가에 대한 모든 기록은 30년간 보존한다.

# 8.2.2 공기 중 노출기준

금속니켈은 피부염이나 진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할 때 시간가중평균농도(Time Weighted Average : TWA)로  $1 \text{ mg/m}^3$ 을 고시하고 있다. 니켈(가용성 화합물)은 폐 손상 및 피부염 및 발암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 $0.1 \text{ mg/m}^3$ , 니켈(불용성 화합물)은 비강암 및 폐암 예방을 위하여  $0.2 \text{ mg/m}^3$ , 니켈카르보닐도 폐 자극 예방을 위하여 0.001 ppm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.

#### 8.2.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

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 장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(1)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
- (2)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

H - 114 - 2019

- (3)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
- (4)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

#### 8.3 작업환경관리

- 8.3.1 니켈과 그 화합물의 대체 사용
  - (1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발암성이 없는 물질로 대체한다.
  - (2) 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다.

### 8.3.2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

작업장 내에 니켈과 그 화합물 취급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
- (1)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작업장과 격리시킨다.
- (2) 해당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.
- (3) 관련 기계,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한 밀폐시킨다.
- (4)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니켈과 그 화합물의 노출을 최소화한다.

### 8.3.3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

니켈과 그 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한다.

- (1)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.
- (2) 니켈과 그 화합물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전체환기

H - 114 - 2019

장치를 설치하여 음압으로 유지한다.

(3)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니켈과 그 화합물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니켈과 그 화합물의 발산을 최소화한다.

#### 8.3.4 환기

### 8.3.4.1 전체환기

사업주는 니켈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.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

- (1) 외부공기는 가능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는 장소여야 한다.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송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시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흡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작업장 외부로 배출된 공기가 당해 작업장 또는 인접한 다른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3)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 국소배기장치에서 배기되는 송풍량을 고려하여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야 한다. 필요 환기량의 산정은 "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W-1-2019)"의 <별표1>을 참고한다.

#### 8.3.4.2 국소배기장치의 설치

작업특성상 니켈과 그 화합물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.

# 8.2.5.1 국소배기장치의 설치

### H - 114 - 2019

니켈과 그 화합물의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구조로 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 방법, 발암성물질의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니켈과 그 화합물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한다.
- (가)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한다.
- (나) 후드의 형식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다)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를 설치하되 발암성물질이 발생되는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.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2)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.
- (3) 국소배기장치는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송풍기,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.
- (5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, 난간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.5배 이상으로 하여 배출된 발암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6) 배기구는 전체환기장치의 외부 공기 유입구와도 15 m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.
- (7)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체흡착 방식,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.
- (8)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<표 4>에서 정하는 제어풍속

H - 114 - 2019

이상이 되도록 한다.

<표 4>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

물질의 상태	후드 형식	제어풍속(m/sec)
	포위식 포위형	0.7
이기 사내	외부식 측방흡인형	1.0
입자 상태	외부식 하방흡인형	1.0
	외부식 상방흡인형	1.2

- 1. 물질의 상태에서 "입자상"이라함은 발암성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,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.
- 2.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 제어 풍속을 말한다.
- 3.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 풍속을 말한다.
  - (가)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 면에서의 풍속
  - (나)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발암성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 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의 풍속

### 8.3.4.3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

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한다.
- (2)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.
- (3) 후드 가장자리에 가벼운 끈 등을 부착하여 제어되는 방향과 강도를 근로자가 보고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(4) 니켈과 그 화합물이 발산되어 근로자가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화재·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, 장비 등의 가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한다.
- (5)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 내에 니켈과 그 화합물이 발산되는 제품

H - 114 - 2019

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.

(6) 당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, 보관한다.

#### 8.3.4.4 국소배기장치의 관리

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재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,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.

- (1)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
- (2)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
- (3)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적정성
- (4)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

#### 8.3.4.5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

- (1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작업 중 국소배기장치(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포함)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, 보존하여 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
H - 114 - 2019

### 8.3.5 개인보호구

- (1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한다.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 및 사용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지침 (KOSHA GUIDE H-82-2015)을 참고로 한다.
- (2)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갑은 니켈과 그 화합물의 피부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구를 사용한다.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사용하고 작업 한다.
- (3) 작업특성상 니켈과 그 화합물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 한다. 눈 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"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·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(KOSHA GUIDE G-25-2011)"를 참고한다.
- (4)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개인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한다.
- (5) 개인 보호구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"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(KOSHA GUIDE G-12-2013)"를 참고한다.

### 8.4 근로자 건강관리

### 8.4.1 건강진단

#### 8.4.1.1 건강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

(1) 니켈과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. 이때 관찰하고자 하는 주요 소견은 흉부방사선, 객담세포검사, 폐활량검사 및 소변 중 니켈 농도의 변화이다.

H - 114 - 2019

- (2) 흉부방사선, 객담세포검사, 폐활량검사 및 소변 중 니켈 농도는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하며 정상범위는 각각의 실험실에서 정한 참고 값을 기준으로 한다.
- (3) 혈액 또는 소변의 니켈 농도를 측정한다. 일반인구에서 농도는 혈액 중  $0.14 \sim 0.63$  5  $\mu g/L$ , 소변 중  $0.9 \sim 3.2$   $\mu g/L$  혹은  $1.5 \sim 1.6$   $\mu g/g$  creatinine 이다.

#### 8.4.1.2 건강진단 실시방법

건강진단 실시 주기, 건강진단항목, 산업의학적 평가(건강관리구분, 업무수행적합성 여부 평가, 사후관리)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"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금속류-3 니켈과 그 화합물, 허가대상물질-황화니켈.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-연구원-903"를 참고한다.

### 8.4.2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

- (1)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수시건강 진단을 실시한다.
  - "비강, 피부 및 호흡기계 등의 증상 및 징후"
- (2)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.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.

#### 8.4.3 근무금지

니켈과 그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에는 임신부나 18세 미만의 사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.